합병계약서

주식회사 화인(이하 **"갑"**이라 한다), 주식회사 화인보광(이하 **"을"**이라 한다)(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함)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합병의 방법】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에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하기로 하며,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한다.

제 2 조 【상호 및 본점소재지】

2-1 상호

"본건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합병기일 당시 "갑"의 상호로 한다.

2-2 본점소재지

"본건 합병" 후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는 합병기일 당시 "갑"의 소재지로 한다.

제 3 조 【합병의 내용】

3-1 존속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존속회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본 건 합병으로 증가하지 아니한다.

3-2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지 아니하고, 존속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증가한다.

3-3 합병 시 신주발행

존속회사는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3-4 합병교부금

존속회사는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합병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합의사항】

4-1 합병기일

합병기일은 2024년 01월 01일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2 합병승인 주주총회

합병의 승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이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2023년 11월 28일에 각 개최한다. 다만, 합병절차 진행상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4-3 채권자보호

"당사자들"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달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4 합병보고총회

"갑"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526조 제1항에 따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5 합병효력발생

"본건 합병"은 합병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6 해산에 관한 사항

"을"의 해산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 5 조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 사항】

본 합병에 따른 "갑"의 정관 제2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1. 각종 공장자동화설비 제조, 판매업
1. 각종 수송기계부품 제조, 판매업
1. 환경위생 및 공해방지설비 제조, 판매업
1. 공장플랜트설비 제조, 판매업
1. 각종 열기기 제조, 판매업
1. 진공펌프 제조, 판매업
1.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업
1.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1. 수출입업
1. 각종 고무제품 제조, 판매업
1. 각종 인조 피혁제품 제조, 판매업
1. 각종 방진제품 제조, 판매업
1. 안전구난장비 및 오염처리제 제조, 판매업
1. 고무보트, 고무충격완화제 제조, 판매업
1. 방석 제조, 판매업
1. 합성수지필름 제조, 판매업
1. 부동산 임대업
1. 원심분리기 제조, 판매업
1.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 판매업
1. 환경전문 공사업
1. 선박건조업
1. 전기장비 제조업 및 판매업
1. 각종 제어장치 제조업 및 판매업

1. 태양광발전사업

1. 산업기계 제조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 6 조 【변경 계약의 체결】

"당사자들"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 관계 당국의 요구 등으로 인해 합병의 실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또는 합병절차 진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병비율·합병기일을 비롯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제 7 조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승계】

"을"은 합병기일에 자산·부채 및 기타의 권리의무 일체를 "갑"에게 이전하고, "갑"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소멸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존속회사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기일이 변경될 경우, 위 승계 일자도 이에 상응하여 변경된다.

제 8 조 【선관주의 의무】

(1)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각기의 업무집행 및 재산의 관리운영을 하여야 하고, 그 재산 또는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은 합병기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합병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공하기로 한다.

제 9 조 【이사 및 감사】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단, 합병등기와 더불어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즉시 소멸한다.

제 10 조【진술 및 보증】

10-1 "갑"의 진술 및 보증

"갑"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을"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1. "갑"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회사이고, 그 자산과 영업을 소유, 임대, 운영하고 현재와 같이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갑"은 "본 계약"을 작성, 체결, 교부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 수권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3. "갑"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갑" 또는 다른 내부규정에 위반되거나 "갑"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4. "갑"의 2023년 9월30일 현재 재무제표는 "갑"의 같은 날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5. "갑"이 "본 계약"을 통한 "본건 합병"에 따라 신주는 발행하지 않으며,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된 보통주식 100,000주와 우선주식(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12,000주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며, 전액 납입되어 있다.

10-2 "을"의 진술 및 보증

"을"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갑"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을"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회사이고, 그 자산과 영업을 소유, 임대, 운영하고 현재와 같이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을"은 "본 계약"을 작성, 체결, 교부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고, "본 계약"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 수권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3.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을" 또는 다른 내부규정에 위반되거나 "을"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4. "을"의 2023년 9월30일 현재 재무제표는 "을"의 같은 날 현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제 11 조 【선행조건】

"당사자들"이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각 당사자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체결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회생, 파산 등 각 당사자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합병조건의 변경】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재산 혹은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본 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합병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각 당사자에게 발행한 제반 비용(합병비율평가를 포함한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변호사/법무사 관련 비용, 감정평가비용 등을 포함한다)은 "당사자들"이 협의·정산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제 14 조 【본 계약의 해제】

14-1 해제사유

합병기일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해제할 수 없다.

1.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각 당사자 영업부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해산, 청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의 재산 또는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진술 및 보증 또는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 받고도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4-2 당사자 합의

"본 계약"은 합병기일 전에 각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즉시 해제될 수 있다.

14-3 손해배상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진술보장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 또는 사업상의 영업비밀과 개발기술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동일한 비밀 준수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보증한다. 다만 법령 또는 법원 기타 정부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6 조【기타】

16-1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명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16-2 추가합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 제12조와 별도로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6-3 일부무효

법률이나 이와 유사한 규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에도, 무효로 되는 조항이 내용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16-4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16-5 기타사항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각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11월 13일

"갑" : 주식회사 화인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 60(화전동)

대표이사 이상준 (인)

"을" : 주식회사 화인보광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30(녹산동)

사내이사 이상준 (인)